

法務法人 淸信
e-mail:cs@cslawf.com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-3 스타갤러리브릿지 13층
전화 : (02)582-6300, 팩스 : (02)582-1177

수 신 : 서울산업진흥원
참 조 : 이제호 님(투자지원팀)
시 행 : 2017. 8. 29.
제 목 : ㈜마트모아닷컴 폐업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검토

- ◎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◎ 위원에서 자문 요청한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,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검토의견 (표지 포함 총 4쪽), 별지 첨부(있음 / 없음)

[질의사항의 요지]

1. 투자기업 개요

○ 투자현황

기업명	품목	SBA 기투자액	주식 보유 현황
(주)마트모아닷컴 (대표 : 양동훈)	지능형 마켓플레이스 플랫폼	200백만원 (2015.04.30.)	1,759주(주당 5천원) ※ 액면가 22.7배수

○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

- 대형마트의 가격정보 제휴 보류에 따른 서비스 출시 지연으로 인한 운영자금 부족
- (주)마트모아닷컴은 식품/생활용품 분야에서 차별화된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의 제휴가 반드시 필요함.
- 그러나 대형마트들과의 제휴가 보류되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·가공할 수 없었음
- 이에 따라 서비스가 출시지연 되면서 연구개발 인력 유지·확충을 위한 운영자금의 부족발생으로 비용이 지속 늘어남에 따라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룸

2. 질의사항

- 회사에 대한 투자금실사보고서에 근거해 볼 때,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는 경우 SBA와 (주)마트모아닷컴 간 체결된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(대표이사)에게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
- 회사와 대표이사의 신용정보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SBA에서 투자된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

[검토의견]

투자계약서상으로는, (주)마트모아닷컴의 진술과 보장 사항(투자계약서에 첨부된 별지 참조)이 허위위거나 부정확한 경우 1)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

를 규정하고 있고(제6조 참조), 2) 투자자가 기한 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(제12조 제6항 제2호 참조), 3) 투자자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(제26조 제1항 제1호 참조).

여기서 (주)마트모아닷컴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폐업하게 되었던 것과 관련하여, 이를 투자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 사항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. 그러나 대형마트들과의 제휴가 진술 및 보장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업계획으로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, 투자계약서 별지 [진술과 보장] 제12조에서 “단, 사업계획서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 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, 대형마트들과의 제휴가 보류된 것을 진술 및 보장 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귀원이 (주)마트모아닷컴을 상대로 투자계약서상 진술과 보장 사항의 허위 또는 부정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, 기한 전 상환청구, 주식매수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.

한편, 기한 전 상환청구권의 경우 “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”에도 행사할 수 있고(투자계약서 제12조 제6항 제5호 참조), 현재 (주)마트모아닷컴이 폐업 상태이므로, 기한 전 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, 이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다만, 이는 결국 (주)마트모아닷컴 또는 연재보증인인 이해관계인(양동훈) 명의로 된 책임재산(예금, 부동산, 자동차, 임대차보증금 등)의 존부 및 그 정도에 따라 실제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, 회수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가 좌우될 것입니다. 끝.

이상과 같이 귀원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. 8. 29.

법무법인 淸信 (청신)

변호사 최 중 영



<유의사항> 본 의견서는 의뢰인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판단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작성된 의견서이므로 본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의견서 또는 사본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